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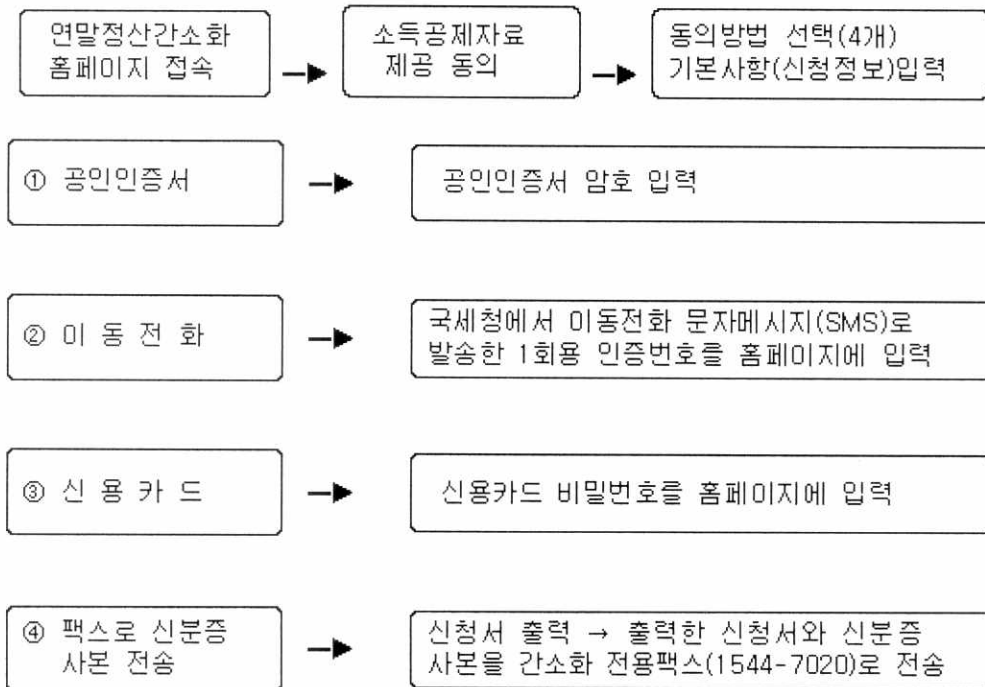
#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소득공제 영수증)를 국세청이 15백만 근로자를 대신하여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인터넷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로, 근로소득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영수증(2013년 귀속 소득공제 증명서류)을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 ▶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의 인감증명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허용되는 공인인증서는 다음과 같다.
  - ① 금융기관(은행, 증권회사 등) 및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 ② 전자정부 인증서(GPKI)
  - ③ 이동전화에 저장하는 공인인증서
- ▶ 소득공제 자료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영수증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득공제 자료제출 담당자 전화번호를 간소화 홈페이지(「영수증 발급기관명단 안내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안내.
- ▶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방법
  - ①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

[#그림]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그림]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①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로 가시면 4개의 동의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첫 번째, 소득공제자료 제공에 대해 동의를 하고자 하는 가족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서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해서 동의하는 방법이 있고
- ③ 두 번째,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국세청에서 이동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동의하는 방법이 있으며
- ④ 세 번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해서 동의하는 방법
- ⑤ 네 번째,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 2013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의 부양가족 동의 신청

만 19세 미만 자녀(1995.1.1.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으며, 2013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만 19세로 성년이 되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자료제공 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함.

#### ② 오프라인(세무서 방문)으로 동의 신청 방법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신분증 지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함

#### ▶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자료 조회 · 출력방법

①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위치 선택>“공인인증서 암호” 입력>“확인” 클릭

\* 이동전화(휴대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③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체 소득공제 항목이 나타남.

④ 소득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처별 지출(사용)금액이 조회됨.

\* 예 : 보험료의 경우 보험회사,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회사 등이 조회됨

⑤ 지출처를 클릭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월별 지출(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 의료비의 경우에는 일자별 상세내역이 조회됨.

⑥ [조회한 항목 한번에 인쇄하기]를 클릭하면 조회한 소득공제 자료 전체 항목이 ‘클릭 한 번(One Click)’으로 출력됨.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2013년 귀속 기준)

[#표]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2013년 귀속 기준)[/표]

구분	공제 항목	제공여부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구입(임차)비용	
교육비	유치원 교육비	○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취학전 아동의 어린이집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국외교육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	△
기부금	기부금 대상단체에 기부한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수취금액	
주택자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연금관련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부담금	○
기 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 :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

※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저축납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금액만 제공

⇒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와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다른 공제 입증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 간소화 누락자료 확인 및 신고기간 운영

·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해당 의료기간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납세자코너>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또는 전화(국번없이 126-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이용시간 : 08:00 ~ 17:00)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자료제출을 재차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1월 21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전자파일 제출

·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소득공제 증명서류와 소득공제신고서를 종이문서 출력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한다.(회사별 시행연도 선택 사항)

·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며, 예외적으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한 소득공제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한다.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소득공제자료조회/출력 → 조회한 항목 한번에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또는 전자문서 다운로드 메뉴 클릭

▶ 제공시기 및 상담문의

- 서비스 제공시기 : 2014년 1월 15일부터
- 상담문의 : 전화 국번없이 126, 내선 7번

**【참고1】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 ▶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궁금해 하는 소득공제 해당여부를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스스로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 이용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 바로가기메뉴 >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서비스

**【참고2】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 ▶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앞서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 ▶ 이용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참고3】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 (영 별표 4, 2011.12.8.개정)**

**[#표]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표]**

공제대상지출항목	조 문 영제216조의3제1항	자료집중기관
연금 보험료	1호	전국은행연합회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1의2호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2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임금이자상환액	5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6호	산림조합중앙회
의료비	3호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법·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4호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 ※2013.12.현재 미고시
교육비	초·중·고등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4호	교육부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4호 다목	여성가족부
	직업훈련수강료	4호 라목	고용노동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6호 다목	중소기업중앙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8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인쇄


 위로가기